

의안번호	2219745
의 퇴 인	백선회의원
회 답 일	2026. 7. 20.
추계번호	26C3307

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2조(건강가정교육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함(제3항)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교육의 내용·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서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함(제4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2조(건강가정교육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제2항 각 호¹⁾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, 증명서 발급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1) 제32조(건강가정교육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결혼준비교육
2. 부모교육
3. 가족윤리교육
4.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

- 다만, 성평등가족부는 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이후 비용 추정이 가능하고, 개정안에서도 서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족센터 부모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음

【표】 가족센터 부모교육 현황

(단위: 명)

구 분	교육 이수자	구 분	교육 이수자
결혼준비교육	8,000	임신·출산부부교육	6,534
다문화가족교육	8,690	자녀학령기부모교육	48,049
아버지역할지원	66,917	조손가족교육	4,908
영유아기부모교육	30,629	한부모가족교육	1,364
위기청소년가족교육	543	혼례가치교육	1,086
이혼위기가족교육	80		
합계			176,800

자료: 성평등가족부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